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11. 4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0월 14일

나. 발의자: 최봉희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11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최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영등포구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,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,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.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자금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, 향후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관계법령의 용어를 적용하여 “공공자금”과 “금고”를 규정함.
- 안 제5조(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)는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”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.
- 안 제7조(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)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음을 규정함.
- 안 제8조(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)는 “금고운용 보고서”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,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함을 규정함. 다만,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명시함.

○ 검토 결과

- 우선, 본 조례안의 입법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관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제2항제1호제사목에서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, 행정관리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볼 수 있으며, 「지방재정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에 자치법규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음.
- 아울러, 공공자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주의 및 엄정관리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정 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폭넓은 재정감독권을 가지고 있기에 매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“금고운용 보고서”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는 조항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지며,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근거하여 “지방재정 운용사항”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7개 지방자치단체(서울특별시 강북구, 계룡시, 광양시, 양양군, 임실군, 함안군, 해남군)에서 “금고운용 보고서”(재무 건전성 평가, 자금관리 현황, 예금과목별 금액 및 잔액, 예치기간, 수익률, 이자수입 총액)를 홈페이지 혹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고 있기에 본 조례안에서 규정

하고 있는 의회 및 홈페이지에 제출 혹은 공개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짐.

- 종합해 보면, 우리 구(區)에서 운영하고 있는 “일반회계”, “특별회계”, “기금”을 묶어 “공공자금”으로 정의하여 운용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이자 수입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15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4. 11. 1.

제안자: 박현우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공공자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-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“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”로 하고, 안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 내용 중 “다만,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”를 “다만, 제2항제5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”로 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“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”로 하고, 안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 내용 중 “다만,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”를 “다만, 제2항제5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,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자금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.
2. “금고”란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유희자금을 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월별·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

2. 공공자금의 배정·집행 계획

3.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

4.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공공자금 운용 원칙)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.

제7조(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.

1. 평균 이자수익률

2. 유휴자금 평균수익률

3.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

4.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,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8조(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) ①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에 따라 매년 상·하반기 별로 보고받은

금고운용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제5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
2.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
3. 예금과목별 금액 및 잔액
4. 예치기간
5. 금융상품별 수익률
6. 이자수입 총액
7.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교육 등)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·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·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

운용 및 관리 조례안

(최봉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0. .

발 의 자: 최봉희, 유승용, 우경란
김지연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영등포구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,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,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마.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.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회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,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자금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.
2. “금고”란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유희자금을 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월별·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

2. 공공자금의 배정·집행 계획

3.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

4.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공공자금 운용 원칙)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7조(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.

1. 평균 이자수익률

2. 유휴자금 평균수익률

3.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

4.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,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8조(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) ①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에 따라 매년 상·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

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
2.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
3. 예금과목별 금액 및 잔액
4. 예치기간
5. 금융상품별 수익률
6. 이자수입 총액
7.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교육 등)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·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·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